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KB라이프생명보험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■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변액보험 운용 관련 공시의무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직전 3년 간 운용경력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에도,

① 회사는 변액보험 운용조직의 2023.2.6. ○○○ ○○○○○를 금융투자협회에 회사의 투자운용인력으로 신규 등록하고, 회사가 운용하는 243개 펀드의 2023.12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운용인력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검사실시 이전까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

② 2023.2.6. △△△ △△△△△를 금융투자협회에 변액보험 운용조직의 투자운용인력으로 신규 등록하고 2023.2.8. 회사 홈페이지에 변경사실을 공시하였으나, △△△ △△△△△의 이전 3년간의 운용경력을 공시하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함에도,

○ 회사는 검사실시 이전까지 2024.8월말 기준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244개 펀드에 대한 집합투자규약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신탁계약서 기재사항 누락

- ☐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'고난도 금융투자상품'에 해당할 경우 동 사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
 - 파생결합증권인 ELS에 투자하는 비중이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'고난도 금융투자상품'에 해당함에도,
 - 회사는 2022.5.23.~2023.9.21. 이후 ELS를 100분의 20 이상 편입하는 '△△△△ELS거치형XX호' 등 12개의 집합투자기구를 신규로 설정하였음에도, 동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집합투자증권이 '고난도 금융투자상품'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

다.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

- ☐ 집합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 - 회사는 관계인수인인 ○○○○(주)이 인수한 '△△△XXXX○○-○' 700억원 중 100억원을 준법감시인 확인 및 협회 공시절차 없이 인수일(2024.1.22.)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4.1.22.에 '△△△△&XXX채권형'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

라. 특별계정 운용전담인력 확보 의무 위반

- ☐ 특별계정을 설정·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인력을 갖추야 함에도
 - 회사는 2020.2.13.~2024.3.25. 기간 중 특별계정(퇴직연금)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인력이 일반계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